

의안번호	2115303
의 퇴 인	서일준 의원
회 답 일	2022. 4. 22.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세버스 여객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—

【비용추계서】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5303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- 전세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)

II. 비용추계 결과

- 재정수입 변화 : 향후 5년간 총 6,313억원(연평균 1,263억원) 감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: 2023~2027년

(단위 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전세버스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 26조제1항제7호가목)	-1,135	-1,195	-1,259	-1,326	-1,397	-6,313	-1,263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1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
일러두기

-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전세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6,313억원(연평균 1,26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율은 2023년부터 25.3%
 - 부가가치세수 감소액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총 4,715억원(연평균 943억원), 지방소비세 감소액은 총 1,597억원(연평균 319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: 부가가치세

(단위 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전세버스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)	-1,135	-1,195	-1,259	-1,326	-1,397	-6,313	-1,263
－ 국세(74.7%)	-848	-893	-941	-991	-1,044	-4,715	-943
－ 지방소비세(25.3%)	-287	-302	-319	-336	-353	-1,597	-319

II. 재정수반요인

- 전세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(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)
 - 개정안은 전세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,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본 개정안이 2022년 중 통과되는 것으로 전제하고, 2023년부터 2027년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
- 부가가치세수 감소액은 추계기간 동안 통계청의 <운수업 조사> 중 전세버스 운송

업종의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2017~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
- 전세버스 운송업은 <운수업조사>에 따른 산업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세부범주에 해당하며, 이에 관하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- (전세버스 업종의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) 최근 5년간 통계청 <운수업조사>에 따른 전세버스 업종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다음과 같음
 - 통계청의 <운수업조사> 자료에 따른 전세버스 업종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전년 대비 감소
 -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

[표 2] 전세버스 업종 부가가치세 납부액: 2016~2020년

(단위: 억원)

	2016	2017	2018	2019	2020
부가가치세 납부액	943	1,123	1,190	1,246	971

자료: 통계청 <운수업조사>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전세버스 업종의 부가가치세 추계) 2017~2019년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2023~2027년의 부가가치 규모 추계
 -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2017~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(5.3%)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 -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제하여 증가율 산정 시에는 제외

[표 3] 전세버스 업종 부가가치세 납부액 추계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
부가가치세 납부액 추계	1,135	1,195	1,259	1,326	1,39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) 전세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6,313억원(연평균 1,26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율은 2023년부터 25.3%
 - 부가가치세수 감소액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총 4,715억원(연평균 943억원), 지방소비세 감소액은 총 1,597억원(연평균 319억원)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전세버스 여객운송용역 공급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(안 제26조제1항제7호가목)	-1,135	-1,195	-1,259	-1,326	-1,397	-6,313	-1,263
- 국세(74.7%)	-848	-893	-941	-991	-1,044	-4,715	-943
- 지방소비세(25.3%)	-287	-302	-319	-336	-353	-1,597	-319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1과
과장	박연서
추계세제분석관	백수연
연락처	02-6788-4745
	sooyeon21@na.go.kr
